

## (사) 대한하키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대한하키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른 관련 사항들을 안내드리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방법

1) 서면 제출

2)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2016년 8월 5일 (금) ~ 2016년 8월 9일 (화) 09:00-18:00 (서류도착 기준)

3) 신청서 제출 기관

(사) 대한하키협회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테니스 경기장 3층 301호

연락처. 02.420-4267~9

### □ 제출 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 2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6)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7) 대한하키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 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퇴임 증명서 (협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9)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탁금 납입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아래 계좌로 기탁금을 입금하고 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입금증, 영수증 등)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 함께 제출.

기탁금 : 일금 삼천만원 (30,000,000원)

예금주 : 대한하키협회

금융기관 : KEB 하나은행

계좌번호 : 252-910014-11404

☛ 대한하키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 12조 (기탁금)

-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3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기탁금 반환에 관련한 사항은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 27조 사항을 참조

□ 회장 후보자 결격 사유 안내

☛ 대한하키협회 정관 제 26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시·도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시·도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시·도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시·도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시·도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국회의원